

## 2021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모

2021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4월 26일

국립암센터원장

### 1. 지원내용 및 분야

구분	연구주제	지원규모
자유 공모	'예방중심의 암 공중보건 연구' 분야의 4가지 연구주제	<b>200백만원 이내/과제, 2년 6개월 이내</b> * 1년자는 6개월의 연구개발기간 감안한 연간 연구비의 1/2 지원 * 연구주제별로 지원금액 및 기간 차등 지원
지정 공모	감염병 상황에서 체계적인 암환자 전원/ 관리체계 구축	<b>80백만원, 6개월</b>

☞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모안내(붙임 2) 참조

### 2. 신청요건

#### 연구개발기관 자격
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

■ 국·공립 연구기관
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-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연구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

## □ 연구책임자 자격

- 프로그램별 제안요청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정규 연구 인력이어야 함
-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,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 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,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‘임용 확약서류’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## □ 세부과제 구성요건

- 지원 프로그램별 제안요청서(RFP)를 참고하여 세부과제를 구성하되,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(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)의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(총괄연구개발계획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대표로 작성)
-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(위탁과제는 구성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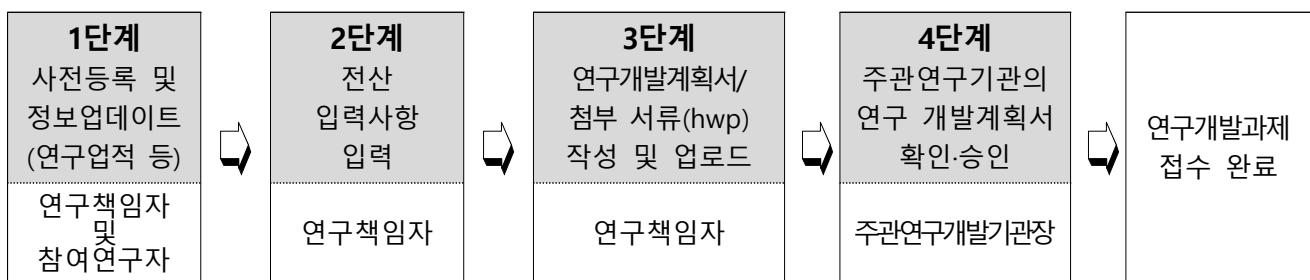
## □ 신청 및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

- 신청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음
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- 보건복지부 또는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, 과제 신청 전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
  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  - ☞ 모든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://www.ntis.go.kr>)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함
  - ☞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거나 정책연구과제는 예외로 함
-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가의 참여(참여연구자) 여부는 과제 선정 후 사안별로 고려할 수 있음(자유공모과제에 해당)

### 3. 신청방법

#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/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- ◉ 연구자, 연구개발기관,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-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공동인증서(舊공인인증서)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- ◉ 기관용 공동인증서(舊공인인증서)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과제 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



\* 과제평가 및 관리는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,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

#### □ 제출기한

- 접수기간: (연구책임자) 5. 21.(금)~5. 26.(수), 17:00  
(기관담당자) 5. 21.(금)~5. 27.(목), 17:00

- ◉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(소속기관)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므로,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

#### □ 제출서류
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전산파일

- ※ 신청 마감시간(17:00) 염수 (마감 시간 이후 연장 불가)
  - ※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(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)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 접수를 진행
  - ※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 및 암정복추진기획단 홈페이지([ncc.ncc.re.kr](http://ncc.ncc.re.kr))를 통해 공지 예정

#### 4. 기타 유의사항

##### □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부담기준

항목	공기업·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3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	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. 연구시설·장비비 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		

※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 
부처에 납부해야 함

-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
##### □ 연구시설 · 장비 도입 및 관리

- 연구시설 · 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 
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를 작성 · 첨부하여야 함

##### 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 
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 
받아야 함

##### □ 임상연구정보 CRIS 등록
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 정보를  
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  
(CRIS, <http://cris.nih.go.kr>)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  
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## 5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등
-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htdream)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

## 6. 문의처

-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
  - TEL) 031-920-1083~5(사업관련), FAX) 031-920-1089
- 홈페이지: <http://ncc.ncc.re.kr>, <http://www.ncc.re.kr>
  - \*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htdream) <https://www.htdream.kr>
  - \*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<https://www.gaia.go.kr>

## 7. 첨부파일

- 2021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모 안내
-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외